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징수촉탁〉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886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징수촉탁	3
참고자료 1. 과태료 징수율	9
참고자료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6.

3. 회 부 일 : 2025. 4. 17.

II. II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 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징수촉탁

-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5조의2(징수촉탁)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행정청에 송금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1.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u>채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u> 2. <u>채납처분비</u> ③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는 <u>상호 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 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 현행법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현행법 제24조제3항¹⁾에서는 과태료의 채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속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징수 업무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채납처분 등)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등록지가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와 지자체간, 행정청과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24조제3항³⁾에서는 과태료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⁴⁾를 근거로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과태료 징수권의 위·수탁 업무협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과태료 징수권의 위·수탁을

2) “자동차 과태료 적시 징수 및 중고차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이코노미톡뉴스, 2021. 12. 21. 기사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는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2호5)에 따르면 “행정청”의 의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징수 촉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기 보다는 행정청간의 과태료 징수를 촉탁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징수 촉탁의 대상인 과태료에는 과태료 외에도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고, 현행법 제24조의36)에서도 징수유예를 결정하는 과태료에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과태료의 범위에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9. (생략)

참고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⁷⁾에서 징수 촉탁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금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목적과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다만, 행정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수촉탁 외에 행정청 간에도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징수촉탁의 대상에 과태료 외에도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7)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행정체제·부과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행정체제·부과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행정체제·부과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과태료 징수율
--------	---------

(단위 : 백만원, %)

결산 회계 연도 기준	최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E=B-C-D)			(C/A)	(C/B)
					미수납액 (E=F+G)	채납액 (F)	납기 미도래 액 (G)		
2023년	553,583	950,467	660,060	961	189,446	272,433	17,012	119.2	69.4
2022년	512,988	846,689	603,470	1,081	242,138	228,669	13,470	117.6	71.3
2021년	503,135	804,829	567,642	906	236,281	227,570	8,708	112.8	70.5

자료 : 2024년, 2023년, 2022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2023년	2022년	2021년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건수	8,800,848	8,354,742	6,509,547
		금액	375,114,212	333,371,323	253,082,688
	징수	건수	7,179,540	6,986,802	5,401,949
		금액	297,248,978	265,122,315	199,942,836
	미납	건수	1,669,101	1,511,244	1,100,817
		금액	77,418,486	68,211,917	53,125,823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과태료	부과	건수	651,867	571,271	605,638
		금액	81,420,800	77,125,363	78,879,670
	징수	건수	431,067	373,794	391,027
		금액	28,097,906	25,887,448	24,508,205
	미납	건수	217,516	196,481	213,067
		금액	53,076,453	50,854,393	53,836,129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	건수	768,306	773,298	672,765
		금액	77,538,828	66,665,449	55,070,359
	징수	건수	594,049	637,682	529,799
		금액	45,741,502	41,224,732	30,845,778
	미납	건수	175,551	147,988	141,568
		금액	31,731,941	25,367,316	24,099,649

자료 : 2024년, 2023년, 2022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행정안전부